

‘26. 7.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 경 과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56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이유

- 지난 '26. 1. 1.에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위원회 명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사항)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2.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장, 제10조)
- (변경 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변경 후) 김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3. 참고사항

-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다. 예산수반 여부 : 부
- 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부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 조회) : 여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아. 입법예고 기간 : 2026. 5. 8. ~ 5. 28.(20일간)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해당 없음

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사. 관련 법령 발췌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아.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 타 시·군 조례 발췌서 : 당진시, 오산시

자. 현행 조례

차. 방침결정문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김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을 “(김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장	김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 구성) ① 시는 탄소중립 사회	제10조(김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의 구성) ① -----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	-----	-----	-----
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김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해당없음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김 제 시



수신 환경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전북김제014)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환경과-11901 (2026. 5. 7.) 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교 육 가 족 과 장

서명생략

주무관	이민애	여성가족팀장	하남	교육청소년팀장	대길 2026. 5. 8.	교육가족과 과장	이전길
협조자				홍수애	장		
시행	교육가족과-16541	(2026. 5. 8.)		접수	환경과-12036	(2026. 5. 8.)	
우	5438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영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0	팩스번호	063-540-4018	/	timejvn9@korea.kr	/	비공개(5,7)
더 특별한 내일, 기희도시 김제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환경과-14169

제 목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 부서의견 조회 결과보고

1. 환경과-11900(2026.5.7.)호와 관련입니다.
2.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 부서의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 기 간 : 2026. 5. 8.(금) ~ 2026. 5. 28.(금), 20일간
 - 나. 대 상 : 실과소, 읍면동
 - 다. 내 용 :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유·무 검토 등
 - 라. 결 과 : 의견없음. 끝.

2026. 6. 2.

김 제 시 장 귀하

주무관

신용수

환경정책팀장

최영호

교장

최종서

별첨자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 환경과-14168

제 목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환경과-11897(2026.5.7.)호와 관련입니다.
2.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26. 5. 8.(금) ~ 2026. 5. 28.(금), 20일간

나. 내 용 :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다. 방 법 : 공고 및 시보게재

라. 결 과 : 의견없음. 끝.

2026. 6. 2.

김 제 시 장 귀하

주무관

신용수

환경정책팀장

정영호

과장

최종서

별첨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8353(2026.6.22.)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26. 6. 18.(목) 09:00
2. 개최장소 : 부시장실
3. 참석위원 : 10명 *대리출석 2명(경제진흥과장, 도시과장)
4. 심의안건 : 총 8건(조례 7, 규칙 1)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8건

연번	심의 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의결결과
계	총 8건 (조례 7, 규칙 1)			
1	2026-21	행정지원과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22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23	회 계 과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원안가결
4	2026-24		김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5	2026-25	투자유치과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026-26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7	2026-27	환 경 과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026-28	시립도서관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투자유치과장, 환경과장, 시립도서관장

주무관	이재현	의회법무팀장	이해라	기획팀장	대결 2026. 6. 22. 기획감사실장	전결
함초자					오경준	
시행	기획감사실-8398			접수		
무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8	/ kirus@korea.kr	/ 부문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획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5. 11. 1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조례마련 여부	위원회 명칭 반영 여부	비 고
김 제	여	부	개정 추진
전 주	여	여	
군 산	여	여	
익 산	여	부	
정 읍	여	부	
남 원	여	부	
완 주	여	부	
진 안	여	부	
무 주	여	부	
장 수	여	부	
임 실	여	부	
순 창	여	부	
고 창	여	여	
부 안	여	여	

□ 참고자료 : 타 시 · 군 조례 발췌서(당진시, 오산시)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1442호

제3장 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장제목 개정 2025.12.15.>

제10조(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조제목 개정 2025.12.15.>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9.> <개정 2025.12.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9.>
2. 지역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정의로운 전환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당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9.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5.4.1.>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2026.04.06 조례 제2361호

제3장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정 2026. 4. 6>

제10조(오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4. 6]

□ **현행 조례**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2023.09.27 조례 제16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 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김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김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

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김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① 시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김제시의회 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김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9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및 대중교통수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친환경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림 및 공원 등을 통한 생활 숲 조성을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가 구성된 경우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겸임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김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김제시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
8.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9.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시장은 탄소중립 시책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에 사업시행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611호, 2023.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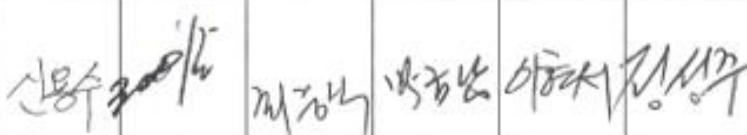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김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김제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본다.

□ 방침결정문

등록번호	환경과 - 11593	주무관	팀 장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결 재	
등록일자	2026. 05. 06.								
결재일자	2026. 05. 06.								
공개구분	비밀외								
의결사항에 대한 설명 비상하는 김제		협 조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김 제 시
환경과